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3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2월 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 신고 도입으로 배출부터 수집·운반·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자적 신고 및 관리로 편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, 분리 배출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을 활성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 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, 전자적 관리 및 보고를 통해 편리성과 투명성을 강화(안 제5조의3제1항).
- 나.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현황 및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(안 제5조의3제2항).
- 다.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등 소각·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(안 제5조의3제3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폐기물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신설·강화되는 규제가 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개선사항없음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
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23. 11. 9. ~ 11. 29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정수형 (☎2133-3730)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3(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 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, 수집·운반·처리 각 단계별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관리하고 보고 받을 수 있다.

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, 관리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현황 및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우선 배출하도록 하는 등 소각·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 설>	<u>제5조의3(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 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, 수집·운반·처리 각 단계별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관리하고 보고 받을 수 있다.</u> <u>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, 관리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현황 및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.</u> <u>③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우선 배출하도록 하는 등 소각·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 :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는 홈페이지 또는 빼기 앱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,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.

4. 작성자 : 자원순환과 공업6급 정수형